

# 甲午改革以後의

## 勳章制度에 對하여

李 康 七

### I. 序 言

#### II. 表勳院의 體制

##### 1. 表勳局

(1) 職 制

(2) 任 務

##### 2. 制章局

(1) 職 制

(2) 任 務

### III. 勳章條例

1. 勳章의 種類

2. 勳章授與 對象範圍

3. 叙勳者 選拔 및 時期

4. 勳章 形態와 佩用法

5. 勳章 佩用細目과 選納制

6. 勳章年金 및 下賜金制度

### VI. 結 言

## I. 序 言

우리나라에 勳章制度가 制定되기는 高宗 36年(1899) 7月 4日 勅令 第30號로 表勳院 官制가 頒布됨에서<sup>1)</sup> 비롯하였는바 이는 開化期에 新文化를 받아 모든 體制가 새로워짐에 따른 것이다.

即 우리나라의 勳章은 日本의 制式을 模한 것인바<sup>2)</sup> 日本은 1875年에 決定을 본 旭日大綬章을 비롯한 여러 種의 勳褒章을 制定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우리나라에서 日本의 勳章文籍을 들여와 高宗 37年(1900) 4月 17日 勅令 第13號로 金尺大勳章, 李花大勳章, 太極章, 紫鷹章이 制定되었고<sup>3)</sup> 一年後인 同王 38年(1901) 4月 16日 勅令 第10號로 八卦章<sup>4)</sup>이 太極章과 같은 格으로 追加되었으며, 同王 39年(1902)에 瑞星大勳章이 李花大勳章 위에 添入되고<sup>5)</sup> 同王 44年(1907) 3月 30日을 期하여 勅令 第20號로써 皇后가 內外命婦에게 授與하는 瑞鳳章<sup>6)</sup> 등 7個種을 制定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勳章에 關係되는 史料는 많을 것이나 于先 高宗, 純宗實錄을 中心으로 官報, 表勳院 來文等을 參考로 未備한 點이 不無일 것이나 勳章制度에 限하여 考究하고자 한다.

## II. 表勳院 體制

表勳院에는 表勳局과 制章局의 兩局이 있으며, 그 職制와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高宗太皇帝實錄 卷 39 40頃 8行~41頃 7行

2) 獨立新聞 1899年 8月 12日字 혼장문적 기사중

3) 官報 號外 光武 4年 4月 19日字 勅令條

4) 官報 光武 5年 4月 18日字 勳章條例 改正件

5) 表勳院 來文 光武 6年 9月 11日 書類와 11月 12日 書類 中間에 改正된 書類는 있으나 改正된 月日은 없음

6) 官報 光武 11年 4月 3日字 勳章條例中 改正件

## 1. 表勳局

表勳局은 勳位, 勳等, 年金, 勳章, 記章, 褒章 및 其他 賞與에 關한 事項과 外國勳章, 記章의 受領 및 佩用等에 關한 事項을 制定하는 곳으로 그 職制와 任務는 다음과 같다.

### (1) 職制

總裁 一人, 副總裁 一人, 議定官 十五人以內, 參書官 一人, 主事 二人

### (2) 任務

ㄱ. 總裁는 勅任 一等으로 補하고 院中 事務 一切을 統督하고 賞勳會議의 議長이 된다.

ㄴ. 副總裁는 勅任 一·二等으로 補하고 總裁를 補佐하여 院中事務를 管掌하고 賞勳會議에 參席하며 總裁 有故時는 事務를 署理한다.

ㄷ. 議定官은 皇族과 曾經大臣 贊政 및 陸軍將官 其他 勅任官 中 勳一等 以上者로 勅任하며 叙勳, 年金及 樞奪會議에 參席하며 總裁, 副總裁 有故時는 首席議定官이 되어 議長事務를 署理한다.

ㄹ. 參書官은 總裁의 命을 받아 院中事務를 掌理한다.

ㅁ. 主事는 上官이 指揮를 받아 庶務에 從事한다.

## 2. 制章局

表勳院의 勳章을 製造하기 爲하여 制章局을 設置하니 그 職制와 任務는 다음과 같다.

### (1) 職制

局長 一人, 技師 三人, 技手 五人

### (2) 任務

ㄱ. 局長은 總裁의 指揮를 받아 勳章 製造事務를 監督한다.

ㄴ. 技師는 局長의 指揮를 받아 技手를 統督한다.

ㄷ. 技手는 技術이 鍊熟한 者를 選拔하여 勳章製造에 從事한다.

위와같은 體制를 갖춘 表勳院은 總裁를 各 府·部 勅任 一等官 中에서 兼任케 하였고 奏任 主事 技手의 任免은 總裁가 奏稟하여 施行하고 判任官 以下는 專行케 하는 한편 議定官은 俸級을 支給치 아니하고 其他 人員은 一般官吏 俸級令에 準하게 하였다<sup>7)</sup>.

## Ⅲ. 勳章條例

勳位·勳等은 功績과 勳勞가 있는 者를 賞하기 爲하여 設定한 바 階級과 勳等에 따라 各種 勳章을 佩用케 하고 勳等은 大勳位, 勳, 功, 三種으로 定하며 勳과 功은 各其 一等으로 부터 八等으로 나누게 되었다.

### 1. 勳章의 種類

勳章 名目은 다음 7種으로 區分한다.

(1) 金尺大勳章

(2) 瑞星大勳章

7) 高宗太皇帝實錄 卷 39, 40頃 8行~41頃 7行 勅令 第30號 表勳院官制

- (3) 李花大勳章
- (4) 太極章
- (5) 八卦章
- (6) 紫鷹章
- (7) 瑞鳳章

## 2. 勳章의 授與對象 範圍

金尺大勳章：無等級으로 瑞星大勳章의 위에 있고 皇室에서만 佩用하고 皇親 및 文武官 中 瑞星大勳章을 받은 者가 特別勳勞가 있을 때 特旨로 叙賜한다.

瑞星大勳章：無等級으로 李花大勳章의 위에 있고 皇室에서만 佩用하고 皇親及 文武官 中 李花大勳章을 받은 者가 特別勳勞가 있을 때 特旨로 叙賜한다.

李花大勳章：無等級으로 太極章의 위에 있고 文·武官中 太極 一等을 받은 者가 特別 勳勞가 있을 때 特旨로 叙賜한다.

太極章：一等等章：各府·部大臣，一品官吏 및 陸·海軍 將官 中 二等勳을 이미 받고 在職 五年以上 勤勞한 者.

二等等章：文·武官 中 三等勳을 이미 받고 在職 五年以上 勤勞한 者.

三等等章：文·武官 中 四等勳을 이미 받고 在職 四年以上 勤勞한 者와 勅任 一等官 五年，勅任 二等官 六年，勅任 三等官 七年以上 勤勞者에게 初授한다.

四等等章：文·武官 中 五等勳을 이미 받고 在職 四年以上 勤勞한 者와 勅任 四等官으로 八年以上 勤勞한 者에게 初授한다.

五等等章：文·武官 中 六等等章을 이미 받고 在職 四年以上 勤勞한 者와 奏任官 三等 以上과 陸·海軍 領官 中 九年以上 勤勞한 者에게 初授한다.

六等等章：文·武官 中 七等勳을 이미 받고 在職 三年以上 勤勞한 者와 奏任官 六等 以上과 陸·海軍 尉官中 九年以上 勤勞한 者에게 初授한다.

七等等章：文·武官 中 八等勳을 이미 받고 在職 三年以上 勤勞한 者와 判任官으로 滿十二年 勤勞한 者에게 初授한다.

八等等章：文·武官 中 三年以上 勤勞한 者 및 判任官 待遇者와 陸·海軍 下士 中 超群한 勳勞가 있는 者에게 初授하고 또는 巡檢·兵卒中에도 特別한 功績이 있을 때는 授與한다. 但 勅·奏·判任官을 勿論하고 非常한 勳勞가 있을 때 上記 各項 年限에 不拘하고 初授 或은 進級을 直行한다.

八 卦 章：光武 5年(1901) 4月 16日 勅令 第10號로 頒布되었고 勳格에 依한 授與對象 範圍는 太極章과 같다.

紫 鷹 章：本章은 武功이 拔群한 者에게 그 功等에 따라 叙賜하였으며 그 區分은 다음과 같다.

(1) 將官 有功者는 功三等에 初叙하고 武功이 더 함에 따라 수차 進級하되 特異한 者에게 特旨로 叙賜한다.

(2) 領官 有功者의 初叙는 功五等이고 尉官은 功六等으로 하며 武功이 더 함에 따라 수차 進級하되 領官은 功二等 尉官은 功三等으로 끝인다.

(3) 准士官·下士 및 兵卒의 初叙는 功八等으로 하고 武功이 더 함에 따라 수차 進級 하되 准士官·下士는 功五等 功兵卒은 功六等으로 끝인다.

(4) 將校 相當官 및 軍屬은 將校 或 下士에 準하여 叙賜한다. 戰時에 武功이 拔群한 者는 彔 項 初叙 例를 不拘하고 一等에 叙賜할 수 있다.

瑞鳳章：本章은 光武 11年(1907) 3月 30日 勅令 第20號로 頒布되었는 바 이는 內外命婦 中 淑德과 勳勞가 特別하면 皇后 徽旨를 經由한 後 다음 勳等에 依하여 叙賜하되 特別한 詔勅 頒布는 없고 叙賜日·授與式만 宮廷錄 事欄內에 掲載한다.

一等章：皇室에서만 佩用하고 外命婦 中 二等勳을 받은 者가 特異한 勳勞가 있으면 特別히 叙賜한다.

二等章：內外命婦 中 三等勳을 이미 받은 者가 特別한 勳勞가 있으면 叙賜한다.

三等章：內外命婦 中 四等勳을 이미 받은 者가 特別한 勳勞가 있으면 叙賜한다.

四等章：內外命婦 中 五等勳을 이미 받은 者가 特別한 勳勞가 있으면 叙賜한다.

五等章：內外命婦 中 六等勳을 이미 받은 者가 特別한 勳勞가 있으면 叙賜한다.

六等章：內外命婦 中 資級을 따라 叙賜하되 初叙는 五等以下로 한다.

### 3. 叙勳者 選拔 및 時期

表勳院에서는 各府, 部, 院, 廳에 連絡하여 各 該 長官及 所管官吏의 履歷書를 調製 送附하게 하여 叙勳할만한 功勞者 有無를 恒常 調査하여 1月과 7月의 定期 議定官會議에서 奏叙하되 非常 勳勞 또는 不時事會로 定期에 하지 못할 境遇에는 特旨로 臨時 奏叙하며 勳章은 本人 以外 佩用하지 못하며 子孫에게도 傳襲하지 못한다.

### 4. 勳章의 形態와 佩用法

#### (1) 大勳位金尺大綬正章

章：金質, 徑 二寸五分, 太極 靑綠色, 金尺 十字形 光線·李花 白色, 葉 綠色.

鈕：金質, 李花形 白色.

環：金質 正圓

綬：廣 一寸八分, 黃質 紅邊織

佩用法：右肩에서 左肋으로 드린다.

#### (2) 大勳位金尺大綬副章

章：金·銀質, 徑 三寸, 太極 靑紅色, 金尺 十字形 光線 二重白色, 李花 白色, 葉 綠色.

佩針：銀質

佩用法：左肋에 단다.

#### (3) 大勳位瑞星大綬正章

章：銀質, 徑 二寸五分, 中央 紅色 星, 銀白色 光線, 李花 白色, 葉 綠色, 葉線 金色.

鈕：金質, 李花李葉形, 花 白色, 葉 綠色.

環：金質 正圓.

綬：廣 一寸八分, 淡紫質 雙黃線 間道織

佩用法：右肩에서 左肋에 드린다.

(4) 大勳位瑞星大綬副章

章：銀質，徑 三寸，中央 紅色 星，銀白色 光線，李花 白色，葉 綠色，葉線 金色。

佩針：銀質

佩用法：左肋에 단다.

(5) 大勳位李花大綬正章

章：金質，徑 二寸五分，太極 青紅色，光線二重 紅色·白色，李花 白色

鈕：金質 李花李葉形，花 白色，葉 綠色

環：金質，正圓

綬：廣 三寸六分，紅質 黃邊織

佩用法：右肩에서 左脇에 드린다.

(6) 大勳位李花大綬副章

章：金 銀質，徑 三寸，太極 青紅色，光線 二重 白色，李花 白色

佩針：銀質

佩用法：左肋에 단다.

以下 太極章，八卦章，紫鷹章，瑞鳳章의 形態와 佩用法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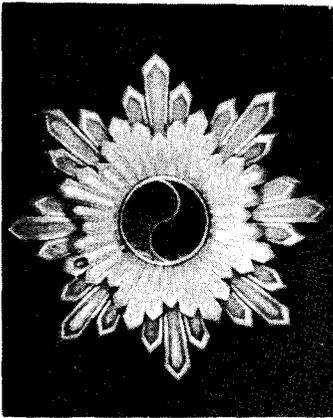


圖 1. 勳二等太極章  
兼 一等副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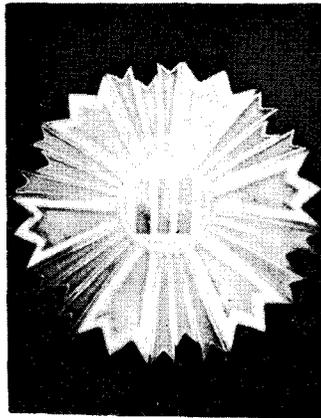


圖 2. 勳二等八卦章  
兼 一等副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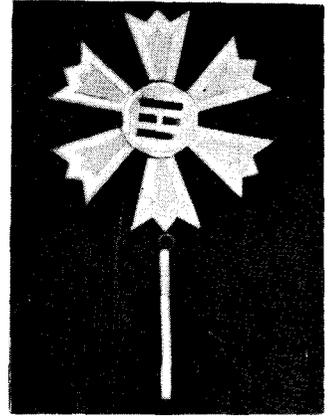


圖 3. 勳三等八卦章  
兼 二等副章

太 極 章

勳 等	章	鈕	環	綬	佩 計	佩 用 法
勳 一 等 太極大綬章	金質，徑 2.5寸 太極青紅色， 光線白色	金質， 李花李葉形 花白色，葉綠色	金質 正圓	廣 3.8寸 紅質紅邊， 青綠間道織		正章은 右肩에서 左脇， 副章은 左肋
勳 二 等 太極章兼 一等副章 (圖1. 參照)	金·銀質，徑 3寸 太極青紅色， 光線二重白色				銀質	正章은 右肋 副章은 喉下
勳 三 等 太極章兼 二等副章	金質，徑 1.8寸 太極青紅色， 光線白色，	金質， 李花李葉形 花白色，葉綠色	金質 橢圓	廣 1寸 //		喉下

勳太	四極	等章	金質, 徑 1.5寸 //	//	金質, 正圓	//	左肋
勳太	五極	等章	//	//	//	//	//
勳太	六極	等章	銀質, 徑 1寸 //	銀質, //	銀質, 正圓	//	//
勳太	七極	等章	銀質, 徑 1寸 //	//	//	//	//
勳太	八極	等章	//	//	//	//	//

### 八 卦 章

勳 等	章	環	綬	佩 針	佩 用 法	
勳八	一卦	等章	金·銀質, 徑 2.5寸 八卦紅色, 光線青色	金質, 正圓	廣 3.8寸 淡青質, 紅線織	正章은 右肩에서 左脇 副章은 左肋
勳八一 (圖 2.)	二卦	等兼章 副章	金銀質, 徑 3寸 //			銀質 正章은 右肋, 副章은 喉下
勳八二 (圖 3.)	三卦	等兼章 副章	金·銀質, 徑 1.8寸 //	金質, 橢圓	廣 1寸 //	喉下
勳八	四卦	等章	//	金質, 正圓	//	左肋
勳八	五卦	等章	金·銀質, 徑 1.5寸 //	//	//	//
勳八	六卦	等章	銀質, 徑 1寸 //	銀質, 正圓	//	//
勳八	七卦	等章	銀質, 徑 1寸	//	//	//
勳八	八卦	等章	//	//	//	//

### 紫 鷹 章

勳 等	章	鈕	環	綬	佩 針	佩 用 法	
功紫	一鷹	等章	金質, 徑 2.5寸 太極青紅色, 梅花淡 紅色, 葉綠色, 光線白色	金質, 鷹形, 淡紫色	金質, 正圓	廣 2.6寸 白質, 白邊, 雙紅線間道 織	正章은 左肩에서 右 脇, 副章은 左肋
功紫一	二鷹	等兼章 副章	金·銀質, 徑 3寸, //, //, //, 光線二重 白色			銀質 正章은 右脇, 副章은 喉下	
功紫二	三鷹	等兼章 副章	金質, 徑 1.8寸, //, //, //, 光線白色	金質, 鷹形, 淡紫色	金質, 正圓	廣 1.2寸 白質, 白邊, 雙紅線間道 織	左肋

功 紫	四 鷹	等 章	金質, 徑 1.5寸, //	//	//	//	//
功 紫	五 鷹	等 章	金·銀質, // , //	//	//	//	//
功 紫	六 鷹	等 章	銀質, 徑 1.3寸, //	//	銀質 //	//	//
功 紫	七 鷹	等 章	金·銀質, 徑 1.2寸 太極青紅色, 光線白色	銀質, // , //	//	//	//
功 紫	八 鷹	等 章	銀質, // , //	//	//	//	//

瑞 鳳 章

勳 等	章	鈕	環	綬	佩 針	佩 用 法
勳 瑞	一 鳳 章	金質, 雙鳳形 長2.5寸, 廣 1.5寸	金質, 九龍雙鳳冠形	金質, 正圓	廣 3.5寸 粉紅質 白線間道織	大禮服에는 大綬章 과 副章, 中小禮服 과 通常服에는 副章
勳 瑞	二 鳳 章 兼 副 章	銀質, 徑 2寸 中央藍色, 單鳳金色 光線白色, 葉綠色 葉線白色, 圓邊六星 紅色			銀質,	大·中·小禮服에 佩用 通常禮服에도 佩用
勳 瑞	三 鳳 章	金質, 雙鳳形 長 1.5寸, 廣 1寸	金質, 九龍單鳳冠形	金質, 橢圓	廣 1寸 粉紅質 白線間道織	//
勳 瑞	四 鳳 章	//	//	金質, 正圓	//	//
勳 瑞	五 鳳 章	//	銀質, 九龍單鳳冠形	銀質, 正圓	//	//
勳 瑞	六 鳳 章	銀質, 雙鳳形 長 1.5寸, 廣 1寸	//	//	//	//

5. 勳章佩用細目 및 還納制

(1) 一等章이 있는 者가 다시 別種의 一等章을 받을 때는 後受한 一等章의 正章·副章과 前受한 一等章의 副章을 并佩한다.

(2) 二等章이 있는 者가 다시 同種의 上級章을 받을 때는 下級章을 佩用하지 않고 別種의 同等 또는 上級章을 받으면 并佩한다.

(3) 二等章과 一等 副章의 두개 以上을 并佩할 때는 後受者를 前受者의 位置 右에 列佩한다.

(4) 三等章 두 개 以上을 并佩할 때는 後受者를 前受者의 位置 위에 단다.

(5) 四等章以下 두개 以上을 并佩할 때는 後受者를 前受者의 位置 右에 달고 從軍記章이나 褒章이 있는 者는 勳章 位置 左에 단다.

(6) 外國勳章을 받아 佩用하고자 하는 者는 佩用請願書를 提出하되 勳章 勳記와 其他 關係書類를 添付하여 表勳院 總裁에게 請願하여 准狀을 받아 佩用하고 死亡時는 30日 以內에 그 事由를 遺族이 表勳院에 報告한다.

(7) 皇親이 外國勳章의 佩用을 願할 때는 勳章 勳記와 其他 關係書類를 具備하여 宮內大臣을 經由하여 表勳院 總裁에게 照會하고 總裁는 審査하여 上奏 裁可를 얻은 後에 施行한다.

(8) 皇親이 外國으로부터 勳章을 寄贈하는 通知를 받았을 때는 外部大臣이 그 事由를 表勳院 總裁에게 通知한다.

(9) 本國 勳章이 있는 者는 外國 勳章만 달지 못한다.

(10) 彼我的 大綬章이 있는 者는 外國 大綬章의 副章만 本國의 副章 位置 아래나 그 다음에 列佩하되 外交時에 限하여 外國의 大綬章과 副章을 달 때는 本國의 副章만 并佩한다.

(11) 彼我的 勳章을 并佩할 때는 우리 勳章 밑이나 그 다음에 列佩한다.

(12) 喉下에 달 彼我的 勳章을 并佩할 때는 外國 勳章을 우리 勳章 밑에 단다.

(13) 左肋에 달 彼我的 勳章을 并佩할 때는 外國 勳章을 우리 勳章 밑에 列佩한다.

(14) 各種 勳章의 略章은 禮服 着用時 대개 左肋에 달고 外國勳章의 略章도 같이 단다.

(15) 略綬는 禮服 着用時에 대개 左襟 鈕孔에 掛佩한다.

(16) 略綬는 別種 2個 以上の 勳章이 있는 者가 各其 綬와 同色되는 絹으로 數個 合製하여 佩用하고 內外 數個의 勳章이 있는 者는 內外 數個 合并한 略綬를 만들어 佩用한다.

(17) 本國의 略綬를 달 때는 外國의 勳章을 달지 못한다.

(18) 同種 上級の 勳章을 받은 者는 下級 勳章을 表勳院에 還納한다.

(19) 外國人도 18項이 適用되며 外國에 있는 者는 우리 公使館이나 領事館에 送付하고 公使館이나 領事館에서는 外部를 通하여 表勳院에 送付한다.

(20) 勳章 還納에 關한 費用은 受領者가 自辨하고 官廳에서 表勳院까지 付送하는 費用은 該 官廳에서 支辨한다.

(21) 勳章을 進叙한 後 下級勳章 還納期限은 京城은 2週日, 各 地方은 50日, 遠道는 70日 以內이며, 이는 우리나라에 居住하는 外國人도 適用되며 外國에 있는 者는 19項에 依한다. 但 進級後 身故한 者는 別途로 한다.

### 章年金 및 下賜金制度

(1) 金尺章, 瑞鳳章, 李花章大勳位

年金: 600元~1,000元

下賜金: 2,000元以內

(3) 太極·八卦 勳二等

年金: 200元~400元

下賜金: 800元以內

(5) 太極·八卦 勳四等

年金: 100元~150元

下賜金: 500元以內

(7) 太極·八卦 勳六等

年金: 50元~80元

下賜金: 300元以內

(9) 太極·八卦 勳八等

年金: 15元~30元

(2) 太極·八卦 勳一等

年金: 400元~600元

下賜金: 1,100元以內

(4) 太極·八卦 勳三等

年金: 150元~200元

下賜金: 600元以內

(6) 太極·八卦 勳五等

年金: 80元~100元

下賜金: 400元以內

(8) 太極·八卦 勳七等

年金: 30元~50元

下賜金: 200元以內

(10) 紫鷹章 功一等

年金: 1,500元

下賜金：100元以內

(11) 紫鷹章 功二等

年金：1,000元

(13) 紫鷹章 功四等

年金：600元

(15) 紫鷹章 功六等

年金：300元

(17) 紫鷹章 功八等

年金：100元

(12) 紫鷹章 功三等

年金：800元

(14) 紫鷹章 功五等

年金：400元

(16) 紫鷹章 功七等

年金：200元

가. 年金은 表勳院 總裁가 年金證書를 作成 授與하되 受領者의 官職, 姓名, 功級과 勳等·年金額證書의 號數, 授與한 年月日, 年金을 支給할 地方廳을 度支部에 通牒하면 該部에서 各該 地方廳에 通知하여 實施하되 年金 受領者가 年金을 受領할 때는 年金證書를 本籍地 或은 寄留地의 地方廳에서 受領者됨을 證明받고 該 地方廳에서는 報告書를 表勳院에 送付하며 年金 支給 初年은 證書의 日字가 6月 30日 以前일 때에는 全額이고 7月 1日 以後일 때에는 半額을 支給하며 年金은 每年 6月과 12月 2회에 걸쳐 度支部에서 地方廳을 經由하여 支給한다.

나. 年金 受領者가 死亡하였을 때는 그 遺族, 祖父母, 父母, 寡婦, 孤兒에게 一年間을 繼賜하되 그 期限은 年金 受領者의 死亡이 6月 30日 以前일 때는 7月 1日부터 翌年 6月 30日로 終了하고 7月 1日 以後일 때는 翌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로 終了하며 祖父母, 父母나 寡婦가 모두 없고 孤兒가 數名 있을 때는 其中 主祀人에게 支給하되 男子를 女子보다 優先하여 年長者에게 支給한다.

다. 年金 受領者가 榮譽汚辱의 所爲로 勳章을 遞奪당한 者는 遞奪日로 年金證書를 還收하여 支給을 中止하고 輕禁錮 및 笞 一百以下 刑을 받고 勳章 遞奪을 하지 않은 者라도 犯罪의 訴를 받고 拘留日로부터 刑期 終了日까지 年金을 停止하며, 年金 受領者가 失蹤하였을 때는 失蹤이 分明해진 後에 失蹤中에 받을 年金을 支給하되 年金支給을 廢止할만한 證據가 確實할 때는 該 主管 地方廳에서 그 年金을 執留하고 表勳院에 報告한다.

라. 水火災 및 盜難等으로 年金證書를 紛失한 때는 그 事實을 該 地方廳에 報告하여 表勳院으로부터 新證書를 請求하고 受領者가 遞奪 當한 때와 死亡하였을 때는 後繼者가 一個年 滿期된 때에 證書를 還納한다.

마. 勳章이 있는 者가 그 榮譽를 汚辱하는 行爲가 있든지 重·輕罪로 拘留 或은 保囚 等を 當하여 勳章 勳記 及 年金을 遞奪할 境遇에는 外國 勳章도 그 佩用 准狀을 沒收한다.

바. 다음 項目에 該當할 때는 榮譽를 汚辱한 者로 認定한다.

1) 重·輕罪의 刑에 處한 者.

但 輕禁錮 及 笞 一百以下の 刑에 處한 者는 그 所犯한 情狀에 依한다.

2) 雜技犯으로 宣告를 受한 者.

3) 懲戒例에 依하여 免官된 者.

위의 第一項 輕罪를 犯한 者는 裁判 確定한 後에 裁判長이 法部大臣 或은 軍部大臣을 經由하여 宣

告書を添付하여 表勳院 總裁에게 通牒하고 重罪에 處할 者は 宣告前に 直行 通牒하고 二, 三項에 該當한 者が 있을 때는 所轄 長官 或은 地方官이 그 情狀을 表勳院 總裁에게 通牒한다.

사. 表勳院 總裁는 그 通牒을 審査하여 重禁錮 및 懲役以上 刑에 處한 者は 即時 上奏하고 輕禁錮 및 笞 一百以下の 刑에 處한 者와 「바」의 二, 三項에 該當하는 者は 議定官會議에 回付하여 그 遞奪 與否를 論定하여 遞奪者는 上奏하여 裁可된 後 總裁는 遞奪狀을 作成하여 當初 通知한 長官을 經由하여 本人에게 傳達하게 하고 遞奪아니할 때는 總裁가 遞奪 通報한 長官에게 通知한다. 但 重罪에 處한 者は 宣告書 謄本을 添付한다.

아. 裁判長은 勳章이 있는 者が 重·輕罪로 訴를 받고 拘留된 때는 그 年月日과 事由를 法部大臣 或은 軍部大臣을 經由하여 表勳院 總裁에게 通報하고 放免될 때도 그 事由를 詳記하여 通報하여야 하고 外國勳章 佩用 准狀을 沒收할 때도 이 格式에 准한다.

#### IV. 結 言

表勳院 體制가 創立되면서 外國의 文籍을 參考로 우리나라를 象徵한 各種 勳章에는 上記 制式에 明示된 바와 같이 李花, 太極, 八卦等을 垂飾하여 諸般 條例 및 制式이 制定되고 等級마다 勳級의 差를 區別하는 等 發展의인 形態를 이루고 있으며 佩用法도 國內外分을 區分하여 儀禮의인 面과 主體의인 面 等을 考慮하여 많은 研究를 거듭한 것이 나타난다. 또한 諸般 犯法者의 勳章에 對한 事後措置 等이 確實하나 反面 勳章 授與者中 犯法者에 對한 特惠는 全혀 없고, 年金制度에 있어서도 每年 受領하는 年金과 一時 下賜金으로 區分하였으나 制定은 하고 施行은 되지 않은 듯하다<sup>8)</sup>. 勳章도 7個種으로 區分 制定하였으나 武功을 세운 者에게 叙勳하게 된 紫鷹章은 授與한 事實이 없는 것으로 보아 施行하지 않은 것이 確實하며, 그 叙勳 實態를 살펴보면 別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00년부터 1910년까지 1,699件에 達하고 있다. 本 統計에 나타난 바와 같이 最初 施行한 年度로부터 年輪을 거듭할 수록 急激히 增加되고 있으며<sup>9)</sup> 特히 1905年度에는 前 4年(1900~1904)間에 叙勳한 數字 178件에 比해 倍에 가까운 數(304件)을 占하고 있고 그 後 1907年度에 349件이 叙勳된 後 2年間은 漸次 弱勢를 보이며, 1910년에는 強勢로 그치고 마는 現象을 볼 수 있다. 또한 國籍別로 叙勳된 實態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除外하고 10餘個 國人에게 (別표(2)參照)<sup>10)</sup> 授與하였는바 特히 日本人에게는 總體的인 面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授與된 數字의 倍를 占하고 있는 現象이며 이는 처음 制定 實施한 3年間 以外는 大概가 壓倒的인 數를 占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事實을 考察할 때 當初 制定 當時의 目的은 華美하였으나 結果的으로 實効를 거두지 못한 點은 매우 哀惜한 일이다.

8) 勅令 第 13號 第 4章 17條

9) 高宗太皇帝實錄 卷40~純宗皇帝實錄 卷4에는 調査한바 全혀 없음

10) 表勳院 來文 3卷에 依하면 隆熙4年 4月 18日字로 表勳院 總裁 趙義淵名儀로 內閣 書記長 韓昌洙 앞으로 日本國將校 1,062名과 第一銀行頭取 以下 22名과 同年 5月 11日字 暴徒鎮壓事件으로 日本國 准士官·下士·卒 5,405名 및 同年 6月 1日字로 將校 722名 准士官·下士·卒 6,125名에 對하여 叙勳議案이 提出되었으나 叙勳 目錄에는 없었음.

表五(1)

各種勳章授與現況

1900~1910

勳格等年	金尺章	瑞星章	李花章	瑞鳳章						太極章						八卦章						計		
				1	2	3	4	5	計	1	2	3	4	5	計	1	2	3	4	5	計			
1900										2	2	3			7									7
1901										2	5	4			11		6	13	7				26	37
1902			2							10	8	2	1		21				1	1		2	25	
1903										1		1			2								2	
1904	3		5							17	10	20	18	10	75	7	4	12	6	5	34	117		
1905			6							14	13	41	43	30	141	18	23	63	30	23	157	304		
1906	1		6							16	15	22	29	18	100	15	18	27	18	11	89	196		
1907	5	6	9							29	29	40	32	29	159	19	36	38	28	49	170	349		
1908	3	4	15	3					3	12	13	24	21	18	88	13	25	38	29	43	148	261		
1909	4	2	5	7	10	3	1	4	25	14	21	10	15	5	65	11	29	14	19	16	89	190		
1910	5		10	8	6	15	6	12	47	10	6	13	9	12	50	3	12	22	35	27	99	211		
計	21	12	58	18	16	18	7	16	75	127	122	180	168	122	719	86	153	227	173	175	814	1699		

表五(2)

國籍別勳章授與現況

1900~1910

國別年度	韓	日	法	德	俄	義	比	英	澳	美	清	瑞典	其他	計
1900	7													7
1901	29	1	7											37
1902	7	4	3	2	4	2	2		1					25
1903		1	1											2
1904	30	81	1	2		1		1		1				117
1905	76	190	11	4		1	3	10		5	1		3	304
1906	85	106	1	1				1		2				196
1907	41	200	18	1						1				349
1908	84	241	2	3	4	1	1	3		2	9			261
1909	67	120									1	1	1	190
1910	130	77	1							1	2			211
計	556	1021	45	13	8	5	6	15	1	12	13	1	4	1699